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02-2004-8936/0991

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국고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 :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형)/
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4.06.11 – 2015.06.10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신한금융투자,한국투자증권,대신증권,대우증권,유진투자증권,메리츠종합금융증권,NH투자증권(우리),현대증권,에이치엠씨투자증권,유안타증권,SK증권,삼성증권,동부증권,케이비투자증권,하이투자증권,미래에셋증권,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4.08.08	법개정등반영 제29조	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	①(~)다만,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(~)행사(이하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한다)한 것으로 본다. 1.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 따라 (~)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(~) 4.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
	법문구명확화 제31조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연기할수 있다.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(법 제 190 조 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)는 법 제 190 조 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"연기수익자총회"라 한다.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://dart.fss.or.kr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□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